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 책 제 안 서

2024.11.12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 책 제 안 서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제10기 서대문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서현, 부위원장 김동현 외 7명

나. 상정 근거 : 상임위원회별 토의 및 동의 절차를 통한 상정

2. 제안이유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예전부터 지속된 남북 대립관계 속에서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예전에 비해 통일 반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남북통일 필요성 조사 결과 반대와 찬성이 분분하게 나옴.)

3) 그러나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하였을 때 경제적 이익과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

3. 주요내용

○ 세부 정책과제

문제점 (1) : 최근 북한과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 북한이 오물 풍선을 여러 번 보내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감이 매우 심해졌다.

문제점 (2) :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분단 후 79년이 지남에 따라 통일 의식 떨어졌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응답자의 80%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현재 이산 가족이 고령화 되어서, 직접적으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연결고리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점 (3)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 반대 여론 높으면 나중에는 통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통일 후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을 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국가적 손해다.

문제점 (4) 서대문구에 청소년 통일 교육 관련 조례가 없다.

○ 해결방안 : 서대문구 차원의 통일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일 반대 인식을 바꾸고 북한과의 대립 관계를 완화시킨다.(통일 교육 조례는 경기도 지역 조례 참고)

*조례 제정안은 뒷면 첨부

○ 기대효과

- 학생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모색할 것이다.

-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나아가 미래사회에 통일을 할 때 더욱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4. 참고사항

- 청소년의회 멘토 서대문구의원 김규진 의원님과 이동수 퍼실리테이터가 주신 조언과 피드백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대문구 평화통일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최근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화통일 교육: 학생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평화통일 지원 사업: 서대문구가 학생들을 위해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원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학생들이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학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거나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화통일 교육 및 지원 사업

제5조 (교육 활성화)

1. 구청장은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한다.
3.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체험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한다.

제6조 (평화통일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화통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관련 자료 발간 및 홍보
2. 학생들을 위한 평화통일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서대문구의 평화통일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

제7조 (학교 및 민관 협력)

구청장은 평화통일 교육과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 민간 단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장 보칙

제8조 (재정 지원 및 지속 가능성)

구청장은 평화통일 교육과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예산 계획 수립 및 편성
2. 구의회 승인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 마련
3. 필요시 민간의 후원이나 공적 기금을 유치하여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

제9조 (보고 및 평가)

구청장은 평화통일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